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11
----------	-----

제출연월일 : 2006년 4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인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구입 의무화하여 도민에게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는 지역은 시지역으로 함(안 제4조)
- 공공기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안 제5조)
- 시장·군수는 매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폐차 지원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협의회” 를 두도록 함(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공급시설(이동식충전시설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2. “대폐차”라 함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환”이라 함은 경유사용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천연가스자동차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2. 청소차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제4조(적용 대상지역) 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는 지역은 시지역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와 제천시 지역은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시부터 적용 하며 그 외 지역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 및 천연가스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대상기관 및 전환명령)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당해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2.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협의회 심의를 거쳐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보급계획에 따라 다음연도의 천연가스자동차 전환대상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전년도 말까지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 전환명령서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환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경우에는 전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보급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당해 지역내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천연가스 자동차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연료별·차종별·연식별 보유현황 및 다음연도 대·폐차계획을 당해연도 3월말까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연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작성, 보급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보급계획을 바탕으로 도의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폐차 지원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구성·운영) ①시장·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환경, 대중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급 2인 이내
2.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 자동차관련 전문가 등 2인 이내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이내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6의2호 규정에 의한 전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령서번호		천연가스자동차 전환 명령서		
제 호				
소 유 자	상 호 (명 칭)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명 령 사 항	자동차등록번호		차 종 (연 식)	
	최초등록일		차령만료일	
	전환기한	년 월 일까지		
	비 고			
<p>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 및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 군수 (인)</p>				

관계법령 발취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 사용자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태양광·수소 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의2.** 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 전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5조의3(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법 제36조의2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등